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481

발의연월일: 2024. 10. 2.

발 의 자: 강대식 • 박준태 • 고동진

주호영 · 강선영 · 유용원

조지연 · 김장겸 · 백종헌

김예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 또는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예비군법」에 따른 대리수령인의 전달의무는 행정절차적 의무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어, 「병역법」상 대리수령인의 전달의무 태만에 대한제재 또한 형평성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리수령인이 전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서 과 대료로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통지서 수령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벌 금을 500만 원으로 상향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5조 및 제95조제5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라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제6조제5항의 세대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그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85조(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 제85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 달의무 태만) 제6조에 따라 병 령 거부)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렁하거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라 송달 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 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제95조(과태료) ① ~ ④ (생 같음) 략) ⑤ 제6조제5항의 세대주 등이 <신 설>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병역 의무부과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그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⑥ -----제5항----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 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 과 · 징수한다. ______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⑥ (생략)